대학평의원회규정 3-1-11

규정번호 3-1-11
제정일자 2007.11.5
최근개정 2026.5.20
개정차수 14차 개정
관리부서 기획평가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정관 제35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제35조의6(운영규정), 우리 대학 학칙 제49조의5(대학평의원회 구성)에 의하여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7.24.)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평의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3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2.26.)

1. 교원평의원 : 4명(개정 2018.12.10.)
2. 직원평의원 : 3명
3. 조교평의원 : 1명(신설 2020.12.07.)
4. 학생평의원 : 2명(호변경 2020.12.07.)
5. 동문평의원 : 1명(호변경 2020.12.07.)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 : 2명(개정 2018.12.10., 호변경 2020.12.07.)
   가. 학부모 1인
   나. 지역사회 1인

② 평의원 후보자의 자격은 교원은 부교수이상, 직원은 6급 이상인 자로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20.12.07.)

③ 학생 평의원은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제4조(추천 및 위촉) ① 교원평의원은 전임교원 전체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하고, 조교평의원은 조교 전체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며, 행정업무는 교무처 교무입학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7.02.27., 2018.03.26., 2018.08.27.. 2020.12.07., 2025.6.23)

② 직원평의원은 직원 전체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며, 행정업무는 사무처 총무회계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7.02.27., 2018.03.26., 2018.08.27., 2025.6.23)

③ 학생평의원은 재학생 중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하며, 행정업무는 학생지원처 학생복지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7.02.27., 2018.03.26., 2018.08.27., 2025.6.23)

④ 동문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하며, 행정업무는 학생지원처 학생복지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7.02.27., 2018.03.26., 2018.08.27., 2025.6.23)

⑤ 기타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기획실장이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하며, 행정업무는 기획실 기획평가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7.02.27., 2018.03.26., 2018.08.27., 2025.6.23)

제5조(임원) ① 평의원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법인정관 제24조의3(추천위원회) 제2항에 의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4.7.24.)

제6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4.7.24.)

③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 대표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각 구성단위 대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한다.(개정 2018.02.26.)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평의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항추가 2018.02.26.,개정 2018.03.26)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개정 2026.5.20.)

② 평의원이 궐위된 때에는 정족수 산입에서 제외한다.(신설 2026.5.20.)

제9조(출석 및 자료제출) 평의원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의장을 포함한 출석의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③ 대학평의원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항추가 2018.02.26., 개정 2018.03.26.)

제11조(비밀유지)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평의원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4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정관을 준 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정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평의원은 총학생회칙에 규정 된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12> <생략>

<13> 대학평의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7호, 제3조①, 제4조1호·2호·3호·4호·5호, 제6조③·④, 제7조1호, 제10조①, 제12조, 14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14> - <102> <생략>

부 칙(학칙) <2010.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9> <생략>

<10> 대학평의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1호 중 “계열”을 각각 “학부”로 하고, 제4조 1호의 “교무과”를 각각 “교무팀”으로, 2호의 “총무과”를 각각 “총무팀”으로, 3호 및 4호의 “학생과”를 각각 “학생팀”으로, 5호의 “기획

홍보과"를 각각 "기획홍보팀"으로 한다.

<11> - <49> <생략>

부 칙(학칙) <2012.6.4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4> <생략>

<5> 대학평의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2호 중 "과반수 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한다.

<6> - <13>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2013.7.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3> <생략>

<4> 대학평의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3호, 4호의 "학생처 학생팀"을 "학생지원처 학생복지팀"으로 하고, 5호의 "기획홍보팀"을 "기획·예산팀"으로 한다.

<5> - <30>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7호,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8조제1항·제2항)